

[별표 7] <개정 2019. 7. 8.>

원산지인증 현판(제24조제2항 관련)

1. 표시도형



2. 제1호의 표시 도형 내부의 “국가명”의 글자는 인증을 신청한 국가명을 표시한다. 다만, 한국산은 “한국산” 또는 “국산” 또는 “국내산”으로 표시한다.

3. 제도법

- 1)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270mm, 세로 360mm로 한다.
- 2) 표시도형은 인증받은 조건에 따라 “95% 이상”과 “100%” 중 선택하여 사용하고 크기는 가로 210mm로 한다.
- 3) “원산지인증 사업장”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.
- 4) “인증번호” 및 “인증기관명”은 바탕체로 하고 크기는 세로 22mm 이내로 한다.
- 5) 표시판이 부착될 위치를 고려하여 “가로×세로”를 “3×4”의 비율로 유지한다면 표시판 크기의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이 경우 표시도형 및 글자의 크기를 같은 비율로 변형해야 한다.
- 6)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,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.
- 7)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, 영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8) 앞판의 문자표시 부분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하되, 영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.